



보험산업 독점규제 적용에 관한 소고

이승준 연구위원

요약

- 독점규제를 통한 경쟁 촉진은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어, 경쟁법 적용 확장은 세계적인 추세임.
- 하지만 효율산출을 위한 통계 집적 등 리스크 관리와 분산이라는 보험업의 본질과 관련된 공동행위의 경우, 공동행위를 통한 중소형 보험회사의 시장진입 촉진과 같은 경쟁 촉진성을 함께 고려한 합리성 원칙에 기반하여 공동행위 부당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음.
-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, 규제당국의 행정지도와 관련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의 규제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법적용의 탄력성과 규제당국 간의 협력이 요구됨.

■ 보험산업의 공동행위에 대한 일반적 독점규제 적용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로 보이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금융규제 강화와 함께 보험산업의 준법리스크와 규제비용을 높일 것으로 보임.

- 우리나라의 경우, 1980년 「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공정거래법’이라 함) 제정 당시부터 금융 및 보험업에 대한 독점규제 적용 논란이 있었으나, 결국 1984년 개정 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, 1990년 개정 시 공정거래법에 금융·보험업에 대한 독점규제가 명시됨.¹⁾
 - 이후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며 독점규제에 관한 국제적 정합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었고, 2000년 적정보험료 권고제도가 폐지되면서 보험회사가 부가보험료를 자율적으로 책정하게 되는 등 보험산업 내에서 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규제제도가 변화하여 왔음.

1) 1999년부터는 법 적용 대상 사업자를 포괄적으로 명시하기 시작하여 “제조업, 서비스업,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”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름.

- 유럽의 경우, 일괄조항인 보험산업에 대한 일괄면제규정(Block Exemption Rule)을 통해 보험산업 내 특정 공동행위²⁾를 독점규제에서 일괄적으로 적용제외하고 있으나, 이 또한 개정을 거치면서 적용제외 범위가 점차 축소되고 있음.
- 지난 2010년 3월 31일, 일괄면제규정인 EC 위원회규칙 제358/2003의 일몰로 표준약관의 제정과 안전장비의 시험과 같은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적용제외가 더 이상 인정되지 않음.

■ 보험은 본질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일상 및 경제활동에서 수반되는 위험을 대수의 법칙을 통해 집적하고 분산하는 사업모형을 영위함에 따라 자연독점에 가까운 특성을 가짐.

- 자연독점적 특성에 따라 다수의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보험관련 통계를 집적하여 효율을 산출하는 행위는 중소형 보험회사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대형보험회사와 경쟁을 촉진하는 측면이 있음.
- 보험상품의 가격 산정 시, 장기간에 걸쳐 보험원가가 확정되는 보험계리적 특성도 고려되어야 하는 등 공동으로 집적된 통계는 상품개발 단계에서부터 보험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.
- 또한 보험회사가 단독으로 인수하기에는 지나치게 큰 특정 위험에 대해서는 여러 보험회사의 공동인수를 통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음.
- 따라서 경쟁촉진성을 가지는 보험회사의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부당성 판단을 위해 세밀한 분석이 요구되며 합리성 원칙(rule of reason)에 입각한 독점규제 적용이 필요함.

■ 보험회사는 다수 계약자의 보험료를 운영하므로 보험계약자보호를 위한 재무건전성 감독은 보험규제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여 왔으며, 최근에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규제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임.

- 다수의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운영하는 보험회사는 금융당국의 전문적 규제를 통해 재무건전성 및 영업행위 감독을 받아 왔으며, 독점규제의 확장에 따라 일반적 경쟁규제와 전문적 보험규제라는 이원화된 규제환경에 놓이게 됨.
-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화되고 있는 건전성감독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제는 보험산업의 규제부담과 준법리스크를 높이고 이에 따른 규제비용을 증가시킴.

■ 보험산업에 대한 독점규제 적용은 이상과 같은 사업모형의 특수성과 이원적 규제로부터 오는 보험회사의 규제비용을 고려해야 함.

2) 현재 2017년 3월 31일까지 유효한 일괄면제규정인 유럽연합 위원회규칙 제267/2010호를 통해 통계의 집적, 통계표, 공동연구에 관한 공동행위와 특정 위험에 대한 공동보험인수행위는 EU 경쟁법에서 적용제외 되고 있음.

- 따라서 경쟁규제 당국은 보험사업모형의 특성에서 오는 공동행위의 경쟁촉진성을 법 집행 시 고려하여 보험산업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.
- 또한 전문적 보험규제당국과 일반적 경쟁규제당국 간의 협력과 정보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보험회사의 규제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규제가 집행되어야 할 필요가 큼.
 - 특히 행정지도와 관련된 보험회사의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법 집행의 투명성과 탄력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양 규제당국 간의 협력 및 정보공유가 각별히 요구됨. **kiri**